상임임원 복무규정

제정 2019. 6.26 시행 2019. 6.27. 개정 2020. 8.18 시행 2020. 8.20. 개정 2022.12.20 시행 2022.12.20. 개정 2023. 2.27 시행 2023. 3. 6.

- 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(이하 "공사"라 한다)의 상임임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규정에서 "상임임원"이라 함은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 및 상임감사를 말한다.
- 제3조(적용범위) 상임임원의 복무에 관하여 이 규정과 달리 정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. 단, 이 규정에서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공사 제 규정에 따른다. <개정 2020.8.18>
- 제4조(근무일·시간 및 근무장소) ①상임임원의 근무일과 근무시간은 원칙적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근무일 : 월요일~금요일
 - 2. 근무시간 : 09:00~18:00, 단 12:00~13:00은 점심시간
 - 3. 휴일 : 복무규정 제18조 각호에 따른 휴일
 -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, 상임임원은 국정과제 및 현안이 있을 경우에는 탄력적으로 근무할 수 있으며, 업무 특성에 따라 유연근무제 운영지침에서 정한 유연근무를 실시할 수 있다.
 - ③제2항의 탄력적 근무 및 유연근무를 실시하게 되는 경우에 상임

- 임원은 사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. 단, 사장 및 감사는 본인의 판단 하에 실시할 수 있다.
- ④상임임원의 근무장소는 본사로 하되, 업무 특성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- 제5조(휴가) ①상임임원의 휴가는 연차휴가, 특별휴가, 공가, 병가, 청원휴가로 구분한다.
 - ②상임임원의 연차휴가에 관하여는 복무규정 시행규칙 제14조를 준용한다. <개정 2023.2.27.>
 - 1. <삭제 2023.2.27.>
 - 2. <삭제 2023.2.27.>
 - 3. <삭제 2023.2.27.>
 - 4. <삭제 2023.2.27.>
 - ③상임임원의 특별휴가에 관하여는 복무규정 제22조를 준용한다.
 - ④상임임원의 공가에 관하여는 복무규정 제23조를 준용한다.
 - ⑤상임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병가를 사용할 수 있다.
 - 1. 업무상 상병의 경우(연 180일 이내)
 - 2. 전염성의 질환으로 인하여 그 상임임원의 출근이 다른 임직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(연 60일 이내)
 - 3. 기타 상병의 경우(연 60일 이내)
 - ⑥상임임원의 청원휴가에 관하여는 복무규정 제25조를 준용한다.
 - ⑦제2항에 따른 연차휴가 중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연차휴가와 제

- 9항에 따라 저축한 연차휴가 중 기한 내에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는 소멸하며,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한다. 연간 연차휴가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일수에 대해서는 무급휴가로 처리한다. <개정 2022.12.20.>
- ⑧제2항에 따른 연차휴가는 상임임원 본인의 판단 하에 사용하며, 제2항에 따른 연차휴가를 제외한 휴가는 사장의 사전허가를 받아 사용한다. 단, 사장 및 감사는 본인의 판단 하에 사용할 수 있다.
- ⑨임원은 매년 말일을 기준으로 제2항에 따른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아니하고 남은 연차휴가를 저축하여 사용할 수 있다. 다만 당해연도 발생하는 연차휴가의 30%(소수점 이하는 절사)를 초과하여 저축할 수 없다. 저축한 연차휴가는 저축한 다음연도 내에 사용하지아니하면 소멸한다. <신설 2022.12.20.>
- ⑩임원은 남은 연차휴가가 없거나 근무기간별 연차휴가 일수를 초과하는 휴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연도에 발생할 연차휴가의 일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연도에 발생할 연차휴가의 30%(소수점 이하는 절사)를 초과하여 미리 사용할 수 없다. <신설 2022.12.20.>
- 제6조(국내출장) ①상임임원은 출장시 출장목적 달성에 최선을 다하여 야 하며, 출장 중 사적 용무 등에 시간을 소비하지 않도록 한다.
 - ②상임임원의 출장에 관한 세부사항은 여비규정에 따른다.
 - ③상임임원은 출장시 사장에게 사전신고 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사장 및 감사는 본인의 판단 하에 실시할 수 있다.

- 제7조(국외출장) ①상임임원은 국외출장시 현재 규범 및 관습을 존중하고 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도록 한다.
 - ②상임임원의 국외출장에 관한 세부사항은 여비규정 및 공무국외출장 규정에 따른다.
- 제8조(외부강의 등) ①상임임원은 교육·홍보·토론회·세미나·공청 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·강연·기고 등(이하 "외부강 의 등"이라 한다)으로 인해 공정·성실한 직무수행을 저해하거나 직 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한다.
 - ②외부강의 등을 할 때에 사장을 제외한 상임임원은 사장 및 임직원 행동강령에 따른 행동강령 책임관에게, 사장은 감사부서의 장 및임직원 행동강령에 따른 행동강령 책임관에게 일시·장소, 주제, 사례금, 요청기관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신고 하여야 한다.
 - ③상임임원의 외부강의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임직원 행동강령에 따른다.
- 제9조(세부규정) 이 규정을 시행함에 있어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사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9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개정 2020.8.18>

이 규정은 2020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개정 2022.12.20.>

이 규정은 2022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개정 2023.2.27.>

이 규정은 2023년 3월 6일부터 시행한다.